

「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」 신구조문대비표 (2023.12.26)

구분	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6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	제6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6조(가입기간 및 저축기간) 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개정 예정